###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 4.26 개정 2022.12.29 [ESG상생협력처 청렴인권부 042-600-8208]

제1조(목적)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당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당사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윤리경영 주관부서장으로 지정된다.
- 2.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원 및 직원 모두를 말하며, 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도 포함된다. <개정 2022.12.29>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및 영에 따라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4.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8.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9.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10.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12.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3조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3. 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4.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5. 공사 ·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 구매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6. 공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7. 임직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8. 공사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9.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1. 1~10호 외에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5조에 규정된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3조 각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는 이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 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신청 혹은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혹은 요청을 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 소속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 혹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1.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 2. 제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무관련자 외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당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② 제1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 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임직원 에게 공개적인 수단을 통해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1. 사업명
-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별표1에 지정된 업무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 배우자
- 2.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상임임원을 지칭, 이하 같음)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장(사장이 제출대상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임직원행동강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 이하 같다)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다는 것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신고 내역을 제출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임원
-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채용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감독기관이거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소속기관, 출연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②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 3. 감독기관이거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하며 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퇴직자와 골프, 여행, 행사,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2.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같이 하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등 제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정책수립이나 자문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삭 제) <개정 2022.12.29>
- 4. (삭 제) <개정 2022.12.29>
-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삭 제) <개정 2022.12.29>
- ⑤ 임직원은 퇴직 후 2년동안 본인이 취업중인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장이 정한 행위
  -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임직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공개 정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규정한다.
- 1. 정관 제2조에 규정된 당사 목적 사업 관련 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정보
- 3. 기타 공사의 기술개발, 자금상황 등 공사 내부 주요 정보
- ③ 누구든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제3자이용·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은 법 또는 지침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사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지침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9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종결처리)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지침 제17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지침 제19조에 따라 이첩· 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또는 지침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22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법 및 지침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 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

해야 한다.

제24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 ③ 공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장은 자문기구 구성 시 전체 자문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외부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⑥ 외부 자문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 ①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 구성 시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25조(자문위원의 제최·기피·회피 등) ① 제24조에 따른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2.29>

-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자문위원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기구에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신설 2022.12.29〉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회피를 자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26조(자문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은 이 법 및 법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 부 칙

(시행일) 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목록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기다드시고함	ᅰ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1	1 가덕도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2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사군관리계획의 입안	
		한 국물모시합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1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4	공공주택사업				제16조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공항시설	공항시설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6	관광지 조성사업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111 JT-11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7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사업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	「국토의 계획 및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8	획의 결정	이용에 관한 법률」	TII oo 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4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기업도시개발	「기업도시개발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9	사업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마을정비구역에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10	서의 농어촌	' <del></del>	세101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   I I <del>-</del>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1017111-	「도청이전을 위한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12	도청이전신도 시 개발사업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트 타제되다	「도시재정비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1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 = · · · = -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101조의3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혁신지구의 지정	
15	역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제41조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15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16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과하 변류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 \ \ \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1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제25조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17	문화산업진흥지 구조성	기본법」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 -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8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YI H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1,20-1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ᅰᇰᇲᅎ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0	빈집 및 ^ 그 ㅁ ᄌ 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21	산업단지개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사업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세10소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ᅰᇲᄌᄋᆝ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WI 1977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신행정수도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22	행정중심복합 22 도시 건설 사업	후속대책을 위한 연가공주자역 행정중심복합도시	TII 24 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ΛВ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23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5	재단 급시 답	두 시원에 신인 특별법」	제11조의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세미소의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24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867	٨١١٥٠٠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개발사업 부성에 판안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2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게르득ㅜ   육성에 관한   #발사업   육성에 관한		TU 0 7 T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7 2 6 ]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2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세10並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저트니자 미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27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당정비사업 │ 상점가 육성을 │ 위한 특별법」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8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20	조성사업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II 147 <u>⊥</u>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30	로봇랜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VII 20:32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30	조성사업	추진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74131-11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21	3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31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3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세12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3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۸۱۱۶۰۲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34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ᅰᇸᅩᅩ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35 혁신도시개발 사업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TII 4 T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u> </u>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6	예비타당성 조사	│ │ │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자구로 한정
37	예비타당성 조사	- 유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시업의 시업자구로 한정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K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고와가 있는경우	바위의 정도가 삼하고 경과실이거나 바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가.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나. 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다. 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라. 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마. 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 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나.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다. 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라. 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4. 법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 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법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의무 위반·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 미이행·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보호조치결정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법 제23조 위반 (비밀누설 금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은 신고·신정인이 삭성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_{ m V}$	표시들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① 담당 업무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소속 ② 사적이해관계	[ ] 개인 [ ] 단체 공직자	[ ] 법인 [ ]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	되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				
참고자료								
본인은 위와 7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	하고 회피를 신청합니	다.					
			년 :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본 지침 제3조 각 호에 따른 이해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를 적습니다.
-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4.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8.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9.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10.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이하 생략)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에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u> </u>			
신청인	성명 주소		소속	연락차	[			] 법인 ]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직자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	·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	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자 [ ] 7	' 타			
			이해관계자의 신고 을 저해할 우려가				단됨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본인은 위와 같	날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	다.				
					년	Ş	실	일
○○기관징	귀중		신청인				(서명	병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i.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밀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신고·신청인 (/ 조		자의 신고 및 회피 -의 거래 신고)	신청, 직무 ;	관련 부동산 보	유·매수 신글	고,
	[ ] 업무 담당 공직	직자 (공직자	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대상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 직무수행의 일			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	지정	
조치결과	[ ] 해당직무 계속 「공직자의 이해충될 소속(	를 방지법 저			≐행 여부의 확인		필요)
기타 참고사항							
사적이해관계	자의 신고 등에 대현	한 조치결과	를 위와 같이 통!	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	가스기술	공사 사 장			(서명 5	돈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이	세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를 합니다	ł.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① 담당 업무		<b>소</b> 속		직위(직급)				
	성명		소속		연락처				
직무관련자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는 단체		
시원의 구의		- 1저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니자				)				
신청 사유									
					14	월	ol		
					년	펄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	며, [ ] 및 □에는 해당혀	ㅏ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당 업부					
부동산 [ ]보유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배우자	[ ] 본인과 생기	계를 같이하는 <sup>;</sup> 생계를 같이하는			
[]매수자	주소						
② H O 메스힘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 지상권 □ 전세권 □ 전세(임차)권 □ 분양	□ 분양권 )	취득(예정)일			
	지번	지목		면적(m²)			
참고자료							
본인은 공공기	관 직무 관련 부동산 도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sup>:</sup>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u></u>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	-(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제63	 도,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및 빌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원의	2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서				
	성명					소속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	l인·단체 등										
근무기			형칭(	(소재지)		직위(직	급)		주요	업무내	 용
대리, 고문·자	문 등										
호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	던 사업 등	I									
근무기 	간	업;	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용 
기타											
근무기 	간 	근	무처	l(소재지)		직위(직	급)		주요	업무내	용 
본인은 민간부	문 업무활동	동 내역을	위의	와 같이 제출협	합니다.						
										O.I	
				u			년		월	일	
한국가스기	I술공사	사상 귀	중		제출	인				(서명	또는 인)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삭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 곳	에 √ 표시들 합니	<u> - 다.</u>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일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인									
	성명		신고인과의	관겨					
			[ ] Hol	Г	1 브이이 지계	조소 비소 「	1 uIIOTI		
거래자				-	_	존속·비속 [	=		
	연락처		[ ] 생계를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①특	수곤	<u>ŀ</u> 계사업자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공직자	
	0 TD 7 7 7					L J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	├행과 관련 <sup>;</sup>	하여 일정한	행위	나 조치를 요~	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거래상대방	[ ] 공직자의 직무수	행과 관련히	여 이익 또는	불(	기익을 직접적으	로 받는 개인이	나 법인 또는	-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	계약을 체결하	거나	체결하려는 것0	명백한 개인이니	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		· ·— ·— ·					_ "	
	③ 신고인의 담당 업					i스포 글로 되는	= 0 = M		
		구判 근단도	! 기네이네이		77226				
	[ ] 금전 차용	[ ] 금	H전 대부	[	] 유가증권 :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뜨느 거츠무	나트) 거리	Γ	_ ] 기타 재산 <sup>,</sup>	사기레			
		또는 신국점	: 5) 기네	L		8 기네 			
거래내용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기네네ㅎ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	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기기재르르				7117/10				
	거래금액				거래원인				
	714107				기네션단				
참고자료									
본인은 위와 같	본인은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1인			(서명	또는 인)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	리(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AI 0 A I I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정일		
(700)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b> 관	얼무 <del>를</del>	[]예[]아니오	
		<b>당하는 공직자</b> 가 있는가?	[ ] 해당없음		
① 가족채용					
		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b> 관	[ ] 예 [ ] 아니오		
	김	·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기	[ ] 해당없음	
	(1	)에서 "예"에 단변하 경우 다	<b>른 법률에서</b> 이 법의 적용을	반는	
② 예외 해당 여부	공	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del>'</del>	·식사의 가족을 재용할 수 있!	도록 <b>허용하고 있는 경우</b> 인가?	,	
		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	사실과 I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시크에의 칠	. ~1	ㄱㅗ ㅁㅣㄹ 쏫ㄹ 끼ㅋᆸ어네.			
				년	월 일
		채	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_	_	] 용역			
_, .	수의계약 사유		<u> </u>	] 물	苦 [_	] 기타			
계약상대	성명 자	소속	]	] 개 ] 단	_	] 법인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 여 ] 하		아니오 음			
2	계약 업무을 법령상시실상 담당하는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기		-	] 여 ] 하		아니오 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b>감독기관 :</b> <b>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b> 해당하는가?	직자의 [	-	[ ]	아니오 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b>모회사 소속</b> . <b>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b>		] 여 ] 하		아니오 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경	•	속 [	=	[ ]  당없음	아니오 음			
6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당없음	아니오 음			
7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해당하는가?	동수의 [	] 여 ] 하		아니오 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74	약상대자(확인인)	·			- 병 또는 인)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	는 곳(	게 √ 표시를	를 합니	<b>라</b>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u>u</u>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i>:</i>	소속 기	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_ 단체
	② 신고인의 담당 업	무와 관련현	한 퇴직자의	직무관	<u></u>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비용	부담자					
	[ ] 골프 [ ] 여 [ ] 식사 [ ] 기		h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본인은 위와 같	같이 퇴직자와의 사직	석 접촉을 <i>(</i>	신고합니다.							
							년		옏	일
			신 <u>.</u>	고인					(서명 5	또는 인)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일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신고자	직업		주소		(1212)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 위반행위자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피신고자)										
	[ ]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 <sup>9</sup>	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신고	일시		내용							
<u> </u>	장소									
	0.1									
エー・コー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위빈	행위를 신고합니							
					년	월	일			
한국가스기	술공사 사장 귀	중	신고인			(서명	병 또는 인)			

###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mark>!</mark> 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앞	자리만)				
신고자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 ] 국민권익위원		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	관 [ ] 감사원					
	위원회 신고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 ] 동의 [	•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조사기관 및	[ ] 감사원 또는	감 <del>독</del> 기관	(	)						
조사 결과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범죄의 혐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니	사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서 소속기관	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반	난행위 신고	2에 대한 조사 결과를	를 위와 같	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u> </u>			
조사	기관 한 <sup>.</sup>	국가스기	술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			

####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 여부 접수일자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내용 신고사항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종결처리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일 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사기관 (서명 또는 인)

# 이해충돌 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이의신청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E H ol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중포원근	조치내용			
조치사항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하	·  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여	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		
			년	월 일
	신_	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기타(	보유·매수 신고 활동 내역 제출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	충돌방지담당관	관 (서명 또는 인)					